

수산사업 어떻게 지원되나

- '89 수산정책과 어민지원사업 안내(발췌) -

수 산 청

1. 어업보상은 어떻게 하나

-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공동·정치·양식어업권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 또는 면허취소당한 경우와, 어업조정상 또는 소하어류(遡河魚類)의 통로방해 제거 등에 따라 어업권의 손실을 입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상의 청구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상 또는 어업조정상 면허의 제한 또는 취소처분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소하어류의 통로방해 제거를 위한 설비의 제거처분(除害處分)이 있는 경우에는 제해공사가 완성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내에 손해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손실보상청구서를 시장, 군수 및 도지사를 거쳐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때 손해액의 산출은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동령제 72조에 정한 방법에 의하고, 보상액의 결정은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월 이내에 관계인에게 통지되며, 동 보상금은 그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처분관청에서 지급합니다.

2. 면허처분전 적지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 양식어업 면허처분전에 신청 품종에 따라 시·군 직원 또는 수산진흥원 지도원(내수면 양어의 경우에는 내수면 연구소 및 도립내수면 시험장 직원)이 현장에 나가 적지여

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 이때 수산진흥원(내수면 연구소 포함) 공무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출원자가 선납하여야 하는 바 수산진흥원 지도원이 조사해야만 하는 품목은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새우, 어류 가두리 양식과 진주 양식 사업이 포함되며 기타품종은 시·군 직원의 적지조사로 갈음합니다.
- 또한 기존 면허양식장의 양식 품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위의 품종에 따라 적지조사를 받아야 하며, 어촌지도소와 내수면연구소 및 도립내수면 시험장별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2)

3. 어업면허 기간을 연장하려면

- 어업면허기간은 양식어업종 건홍식·수하식·축양은 7년이며, 살포식·투석식·

표 1 어촌지도소별 적지조사 관할구역

| 지도소별 | 전 화 | 관 할 구 역 |
|------|----------|--------------------------------------|
| 화 성 | 4-2445 | 인천, 안산시, 화성, 평택, 용진, 강화, 김포, 파주군 |
| 속 초 | 33-4814 | 속초, 강릉시, 고성, 명주, 양양군 |
| 동 해 | 33-2611 | 동해, 삼척시, 삼척군 |
| 서 산 | 5-2740 | 서산, 태안, 당진, 아산군 |
| 대 천 | 33-6408 | 대천시, 보령, 홍성, 서천, 부여, 논산군. |
| 부 안 | 82-8789 | 군산시, 부안, 고창, 김제, 옥구군 |
| 완 도 | 2-3873 | 완도, 강진군 |
| 진 도 | 2-2768 | 진도군 |
| 영 광 | 2-5583 | 영광, 함평, 무안군 |
| 해 남 | 32-8501 | 목포시, 해남, 신안, 영암, 나주군 |
| 고 흥 | 32-2859 | 고흥, 장흥, 보성군 |
| 여 수 | 2-4467 | 여수, 여천, 순천시, 여천, 광양, 송주군 |
| 울 릉 | 791-2895 | 울릉군 |
| 영 일 | 76-2562 | 포항시, 영일, 울진, 영덕, 월성군 |
| 삼천포 | 32-9396 | 삼천포시, 사천군 |
| 남 해 | 867-2413 | 남해, 하동군 |
| 충 무 | 44-3057 | 충무시, 통영, 고성군 |
| 의 창 | 7-4501 | 부산, 마산, 진해, 창원, 울산시, 의창, 울주, 양산, 김해군 |
| 거 제 | 32-6700 | 거제군 |
| 제 주 | 42-2511 | 제주, 서귀포시, 북제주, 남제주군 |

표 2 내수면 연구소 적지조사 관할구역

| 연구소 · 시험장 | 전 화 | 관 할 구 역(위치) |
|-----------|----------|---------------|
| 국립수산진흥원 | | |
| 청평내수면 연구소 | 4-0333 | 강원, 경기, 충남북 |
| 진해 " | 2-3521 | 전남북, 경남북, 제주도 |
| 양양 " | 672-3729 | 강원 |
| 도립내수면시험장 | | |
| 경기도립 " | 72-3480 | (양평군 가평면) |
| 강원도립 " | 72-3226 | (삼척군 근덕면) |
| 충북도립 " | 2-3908 | (충주시 용탄동) |
| 충남도립 " | 34-1877 | (논산군 연산면) |
| 전북도립 " | 42-0086 | (임실군 관촌면) |
| 전남도립 " | 2-8052 | (장성군 장성읍) |
| 경북도립 " | 33-5205 | (영덕군 강구면) |
| 경남도립 " | 52-5505 | (밀양군 산회면) |

* 주 : 전화 국번은 지도소, 연구소, 시험장이 위치하는 지역의 고유국번임.

축제식 · 정치어업 · 제1종 공동어업은 10년, 제2종 공동어업 및 제3종 공동어업은 5년입니다.

- 그런데, 이 면허기간이 만료 되면 다시 면허를 하지 않고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 어업의 면허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와 어민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연장허가 신청은 어업권자가 전에 받은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되기전 3개월부터 1개월까지의 사이에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어업권자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채권자)가 어업면허기간이 만료되기전 2개월부터 15일전까지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도 연장됩니다.

4. 원양어업의 허가 신청절차

- 수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허가 신청은 당해 선박의 국적증서사본, 선박검사증서사본(타인소유 선박일 경우 임차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포함) 각 1부를 첨부하여 당해 신청서(정부수입인지 1,000원 첨부)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처리, 신청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포함)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에게 인허가세를 납부 후 허가장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 연근해어업에서 원양어업으로 전업할 때에는 원양어업 허가를 받기 전에 어선법에 의거 수산청장에게 어선의 종업제한 변경 승인 신청(제1종에서 제3종으로)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어업허가 신청을 하며, 신청절차와 구비서류는 원양어업허가 절차와 같습니다.

5. 어선을 수입하고 싶는데

- 정부의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라 '88. 4. 1부터 선령 1년 미만의 신조선 수입은 자유화되었으나 중고선은 계속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어선의 수입은 수산자원보호, 어업조정, 기타 공익을 위한 어업허가제도상 건조발주 또는 양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절차에 관계없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어선을 외국조선소에서 건

조하고자 하는 분도 어업 허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수산청장의 사전 건조 발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 소유 어선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수산청장의 양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어업허가 또는 면허가 가능한 신조어선은 제한없이 허가되나, 중고선은 수입이 허용된 품목으로서 어업허가가 가능한 어선을 제한적으로 허가합니다.

- 양수허가 대상어선은 뒤에 나오는 용선허가 대상어선 조건과 같습니다.

어선양수허가 관련 이행사항

- 수입승인신청 -

어선양수허가를 받은 후 외국환은행에서 수입승인을 받으셔야 함.

- 수입 신고 -

수입 승인을 받은 후 어선이 국내 최초 입항시 통관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셔야 함.

- 어선총톤수측정 및 검사신청 -

수입신고를 하신 후 어선총톤수 측정 및 어선검사 신청을 하셔야 함.

- 비입급선박의 경우에는 한국어선협회에 어선총톤수 측정 및 어선검사 신청을,
- 입급선박의 경우에는 한국어선협회에서 총톤수 측정만

받고 한국선급에서 입급검사를 받으셔야 함.

- 선박등기, 어선등록 등 -

선박등기, 등록, 어업허가 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등은 어선 건조 발주허가 후 이행사항과 같습니다.

6. 어선을 용선하고 싶는데

- 어선의 용선허가는 용선기간 만료 후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과 일정기간 사용 후 선주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간나용선 허가가 있습니다.
- 어선을 용선하고자 하는 분은 사전에 용선허가목적, 어선의 규모, 선령, 조업어장, 어업협력 등 관련자료를 수산청장에게 제출(원양어선은 한국원양어업협회 경유)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경우는 사전승인을 받은 다음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수산청장의 수입 필요성 확인과 상공부장관의 수입 추천을 받아 용선허가 신청서에 선박국적증서, 계약서를 첨부 수산청에 제출하시면 되고,
- 기간 나용선의 경우는 수산청장의 수입 필요성 확인 및 상공부장관의 수입 추천이 생략되므로 수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 용선계약

을 체결하고 어선용선허가신청서에 선박국적증서, 계약서를 첨부 수산청에 제출하시면 되나 다만 일본어선은 제외됩니다.

<용선허가대상>

- 신조선 : 어업허가 또는 면허 가능 어선
- 중고선
 - 원양참치선망어선으로서 1,000톤이상, 선령 10년이하로서 국내신조연계용
 - 원양트롤어선으로서 1,500톤이상, 선령 10년이하의 정부간 어업협력용과 1년이상 시험조업결과 어장성이 확인된 어장 개발용어선
 - 냉동운반선으로서 400톤이상, 선령 10년이하의 어선

어선용선 허가 관련 이행사항

- 외국환의 지급인증 신청 -

어선용선허가 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용선계약서 상에 외국환 지급인증을 받으셔야 함.

- 수입 신고 -

외국환의 지급인증후 어선의 국내최초입항시 관할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셔야 함.

- 어선검사신청 -

수입완료 후 어선검사신청을 하셔야 함.

- 신청기관 : 한국어선협회, 한국선급(입급선의 경우)
- 첨부서류 : 설계도(40톤이상), 어선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어선검사에 관

한 첨부 서류

* 한국선급 입급어선은 한국선급규정에 의함

- 어업허가신청 -

어선검사 완료 후 어업허가를 신청하셔야 함.

7. 어선을 양도 또는 대여하려면

○ 어선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어선으로 등록하여 어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외국(인)에 양도 또는 대여하려면 수산청장의 양도, 대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양도 또는 대여시 대외무역법, 외국환관리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 또는 대여 가능여부, 어선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우리나라 어선의 조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당해 어선의 담보권 해제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 허가신청시에는 어선양도 대여허가 신청서에 선박국적증서, 계약서 기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선양도허가 관련 이행사항

- 수출승인 신청 -

어선양도허가 후 외국환취급은행에 수출승인 신청을 하셔야 함.

- 어선말소 등록신청 -

수출승인 후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시군에 말소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어선 말소등기 -

20톤이상 어선은 어선말소등권이 완료된 후 관할등기소에 어선말소등기신청을 하셔야 함.

- 수출 신고 -

수출승인 후 국내최종 출항전에 관할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셔야 함.

- 어업허가 폐지신고 -

어업허가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허가받은 어업을 폐지할 때) 어업허가 폐지신고를 하셔야 함.

어선대여관련 이행사항

- 외국환의 인증 -

어선대여허가 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여계약서 상에 외국환의 인증을 받으셔야 함.

- 어업허가 폐지신고 -

어선대여후 어업허가 폐지사유가 발생할 경우(허가받은 어업을 폐지할 때) 어업허가 폐지신고를 하셔야 함.

8. 어선건조에 필요한 선박용 기관, 장비를 수입하려는데

○ 어선에 필요한 선박용 내연기관, 레이다, 로란, 방향탐지기, 어군탐지기, 집어등, 무전

기, 유압원치 등 어선용 기자재는 수입자유화품목이므로 제한없이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된 기자재는 무역 역조폭이 큰 입초국(入超國)으로부터의 수입은 불가능합니다.
 - 수입선 다변화 지정품목 : 선박용내연기관, 발전기, 공기압축기, 선박용배전반 레이다, 무전기, 체인블록, 유압원치 및 캡스탄, 라이홀라, 오수처리기 및 에어콘, 연료 및 윤활유 펌프, 선회창, 선박용 또는 어업용기기, 냉동기
 - 수입선 다변화 미지정 주요품목 : 어군탐지기(스캐닝소나), 로란, 방향탐지기, 집어등,

조수기

- 수입선 다변화품목이라도 국내건조에 필요한 기자재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의 경우에는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장의 추천을 받아 입초국으로부터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9. 어선검사를 어선소재지에서 받으려면

- 어선의 검사는 한국어선협회 9개지부 3개출장소 8개분소에서 검사원이 상주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어민의 생활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검사집행지를 지정(62개지역)하여 검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낙도, 벽지어민에게는 정기적인 순회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선검사신청시 현지출장검사에 응하고 있어 어민이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어민의 검사편의를 위하여 검사기일 1개월전에서 수검안내문을 통지하여 검사기일을 알려주고 있으며, 검사일 경과후에도 수검촉구안내문을 통지하여 미수검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선검사는
상주, 순회, 출장검사가
있습니다.

너와 나의 보안생활

국가안보 초석된다



畫報

林得明「西行千里」長卷中 平壤圖 1813年